

구미시 장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기부 고시 제2020-40호, 2020. 8. 27.)
- 나.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강소특구 지원사업 및 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라. 기술핵심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강소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4조)
- 바. 수혜자의 의무 및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제4조, 제9조, 제9조의3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강소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강소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강소특구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강소특구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강소특구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첨단기술기업 창업 및 유치에 관한 사항
3.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에 관한 사항
4. 강소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강소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강소특구에 대한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강소특구 지원 사업) 시장은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과학기술 진흥 사업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활용 지원 사업
4.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5. 첨단기술기업 창업·유치 및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사업
6.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
7. 공공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8.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
9. 강소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조직의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시장은 지원조직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에 따라 구미시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술핵심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핵심기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강소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9조(강소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강소특구 지원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강소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 및 기업지원 등 강소특구 지원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 5명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가. 과학기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연구기관·벤처기업 관계자, 구미시의회 의원, 언론인, 교수

다. 그 밖에 강소특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강소특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강소특구 지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기술협의체 및 자문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

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기술협의체 참석위원 및 자문에 참여한 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수혜자의 의무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학·연구소 및 기업 등은 지역 재투자 등을 통해 강소특구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강소특구 사업 수혜기업이 관내에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설치(증설을 포함한다)할 경우 「구미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③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2.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것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할 것

3. 특구 안에 설립할 것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4조제1

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는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육성하는 방식

2.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특구를 조성·육성하는 방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있을 것

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공계 학부를 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3개 이상

2. 대학·연구소 및 기업 상호 간 협의기구가 있을 것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있을 것

4.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을 것

5. 교통·통신·기반시설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에 쉬울 것

6. 해당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 1개 이상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기관과 해당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

3. 해당 지역이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정요건에 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요건을 갖출 것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 9. 생략

10.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추진위원회 수당 지급(안 제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추진위원회 수당 지급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 100천원 × 13명 × 2회 = 2,600천원
 - 산출근거
 - 70,000원(기본)+30,000(초과), 위촉위원 최대 13명으로 산정
 - 연 2회 개최 예정

4. 작성자

- 스마트산단과 산단인프라계 이혜나(054-480-6188)

소 관 부 서		스마트산단과
입 안 자	과 장	김 용 수
	담 당	장 정 수
	담 당 자	이 혜 나 (480-6188)